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7월 15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- 삼성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25. 3.20

3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[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] [요약정보] - 주요투자위험 [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] -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> 나. 특수위험	아니오	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	(신 설)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 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 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,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. 투자신탁의 초기기준가(상장시점의 기준지수) 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 다. 즉,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(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 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)이익 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 1) 보유 중인 자산의 가격하락에 따 른 평가손실,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)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,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 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 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 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 습니다.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[요약정보] - 투자실적 추이 - 운용전문인력 [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]	아니오	작성기준일 업데이트	-	업데이트

항 목	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5. 운용전문인력 [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]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[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]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> 라. 운용자산 규모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아니오	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추 가)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 급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. ①보유 중인 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,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자산에서는 매매이익,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 이 발생된 경우 등
14. 투자신탁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아니오	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가. 이익분배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 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 零 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1)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 라 계산되는 이익(추 가) 2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3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 자재산의 매매이익 4) (추 가) 나. 투자신탁분배금 (1) 집합투자업자는 가.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신탁 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 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재산내 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 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(추 가) 집합투자업자는 투 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 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 (2)~(3) (생 략) (4) (추 가)	가. 이익분배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 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 零 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1)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 라 계산되는 이익 (다만,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.) 2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3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 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)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 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 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 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나. 투자신탁분배금 (1) 집합투자업자는 가.이익분배와는 별도로 (삭 제)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 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분배금 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을 초과할 수 있고,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 (2)~(3) (현행과 같음) (4)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 급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

항 목	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				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.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,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,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